

## 월간 자본시장 제도동향

2021년 12월호

### 1. 한국거래소 규정

- 가.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
- 나.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
- 다.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
- 라. 코넥스시장 공시규정
- 마.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
- 바.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
- 사. KRX금시장 운영규정
- 아. 증권·파생상품시장 증거금 관리지침
- 자. KRX석유시장 운영규정
- 차. KSM 운영지침
- 카. 사회책임투자채권 전용 세그먼트 운영지침

## 1. 한국거래소 규정

- 가.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(현금배당을 위한 기준일 결정시 공시의무 신설 등)
- 나.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 (기업지배구조보고서 제출대상 확대 등)
- 다.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(경기순응성 완화를 위한 비율 적용 대상 변경 등)
- 라. 코넥스시장 공시규정 (주식배당 결정 공시기한 개정 등)
- 마.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(단기금리선물시장 및 단기금리선물스프레드시장 개설 등)
- 바.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(주가지수옵션의 행사가격 범위 확대 및 행사가격단위 조정)
- 사. KRX금시장 운영규정 (일반회원의 금지금 매수호가 제한)
- 아. 증권·파생상품시장 증거금 관리지침 (최저증거금을 제도 도입 등)
- 자. KRX석유시장 운영규정 (결제안정성 제고를 위한 거래보증금 인상 등)
- 차. KSM 운영지침 (추천기관 관리 방식 변경 등)
- 카. 사회책임투자채권 전용 세그먼트 운영지침 (SRI채권의 조달자금 사용 보고서 등 관련 미비점 개선)

## 1. 한국거래소 규정

### 가.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(2021/11/24 개정 · 2021/12/13 시행)<sup>1)</sup>

#### 1) 개정 이유

- 상법 시행령 개정(2021. 1. 1. 시행)에 따라 배당기준일 관련 공시의무를 신설하고, 불성실공시법인에 대한 사후조치를 강화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기 위함

#### ※ 상법 시행령 개정(2021. 1. 1. 시행) 주요내용

- 주총 소집통지(주총 2주 전)시에 사업보고서를 의무적으로 첨부하여야 함  
(3월말 주총을 위해서는 현행 보다 빠른 시점에 사업보고서 작성완료 필요)
- 결산을 조속히 완료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 사업보고서 작성완료 시점으로 주총 일정이 연기되면서 기준일도 연기되어 결산일(12월말)과 분리될 가능성
- \* 정기 주주총회를 4월 이후 개최하는 경우 상법(제354조)상 기준일은 주주총회 전 3개월 내에 정해야 하므로 기준일은 1월 이후가 될 것으로 예상

\* 해당 내용은 매월 1일에서부터 말일까지 개정된 금융투자협회 규정 및 금융투자협회에서 공지하는 개정이유를 바탕으로 작성됨

1) 제2조 제7항, 제1항 및 제12항의 개정 규정은 2021년 12월 30일부터 시행

## 2) 주요 내용

- 현금배당을 위한 기준일 결정시 공시의무 신설(제7조 제1항 제2호 마목 (5))
  - 상장법인이 결산배당을 위한 기준일 결정시 공시의무를 신설
    - 단, 정관에서 특정한 일자를 배당기준일을 별도로 정하고 있어 상법상 공고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는 제외
- 주식배당 결정 공시시한 개정(제7조 제1항 제2호 마목 (4))
  - 주식배당 결정의 공시시한을 (기존) 사업연도말 10일전 → (개정) 기준일 10일전으로 변경
- 불성실공시 관리 합리화(제2조, 제32조, 제35조)
  - 불성실공시법인의 정의를 ‘거래소가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한 법인’으로 일원화
  - 벌점감경으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미지정된 법인에 대한 주의조치를 위한 근거규정 마련
-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대상 확대 등(제24조의2, 제48조)
  - 금융위원회의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확대방안(2021. 1. 14)을 반영할 수 있도록 공시의무 대상을 세칙으로 위임
  - 기업지배구조 보고서의 영문공시 제출시한을 기존 1주일에서 3개월로 확대
  - 결산월과 상관없이 기업지배구조보고서의 제출기한을 매년 5월 31일까지로 일원화
- 거래소 시장안내 근거규정 명확화(제51조)
  - 시장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, 거래소가 직접 시장에 공표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 명확화

## 나.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 (2021/11/25 개정 · 2021/12/13 시행)

### 1) 개정 이유

- 금융위의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확대방안(2021. 1)에 따라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제출대상을 확대하고, 불성실공시와 관련된 제재의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함

### 2) 주요 내용

-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제출대상 확대(제7조의2, 제8조)
  - 자산총액 1조원 이상의 상장법인을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제출대상으로 추가

## □ 불성실공시 제재심의기준 개선(별표 2)

- 벌점 가중 · 감경한도를 2점이내로 축소
  - 단, 유가증권시장 상장 · 공시위원회 심의에 의한 경우 기존대로 4점 한도 유지
- 가중 · 감경 사유별로 배점 차등화(중대사유는 2점으로 상향하고, 경미한 사유는 0.5점으로 하향)
- 가중 · 감경사유의 조정을 통한 합리성 제고
  - 중복 가중 · 감경사유를 하나의 가중사유로 통일
  - 불성실공시 이력이 있는 경우 벌점을 가중하고 감경을 제한
  - 공시교육 이수 관련 사항을 감경사유에서 가중사유로 전환
  - 기타 다른 사유와 중복될 가능성이 있거나 가중 · 감경 타당성이 부족한 사항의 삭제

## 다.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(2021/11/25 개정 · 2021/11/29 시행)<sup>2)</sup>

### 1) 개정 이유

- 위탁계좌 그룹의 거래증거금 감면비율을 축소하고, 경기순응성 완화를 위한 비율 적용 대상을 거래증거금률로 변경하기 위함

### 2) 주요 내용

#### □ 경기순응성 완화를 위한 비율 삭제(별표 5)

- 경기순응성 완화를 위한 비율 적용 대상을 거래증거금액에서 거래증거금률로 변경
- 소관사항을 「증권·파생상품시장 증거금 관리 지침」으로 위임하기 위해 별표5의 관련 내용을 삭제

#### □ 위탁계좌 그룹의 거래증거금액 감면비율 변경(별표 5)

- 별표5에 따른 위탁계좌 그룹의 거래증거금 감면비율인 조정계수를 단계적으로 변경
  - (기존) 0.85 → (개정) 0.9 (2022년 6월 30일 까지) → 1 (2022년 7월 1일 이후)

### 3) 관련 법률 개정

#### □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(2021/11/25 개정 · 2021/11/29 시행)

- 별표 6

2) 별표 5의 제2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3일부터 적용

-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(2021/11/25 개정 · 2021/11/29 시행)
  - 별표 3

## 라. 코넥스시장 공시규정 (2021/11/24 개정 · 2021/12/13 시행)

### 1) 개정 이유

- 상법 시행령 개정(2021. 1. 1. 시행)으로 결산일과 배당을 위한 기준일이 분리 가능해짐에 따라 배당기준일 관련 공시 의무를 신설하는 등 관련 사항을 정비하기 위함

### 2) 주요 내용

- 주식배당 결정 공시시한 개정(제6조 제5호 다목)
  - 주식배당 결정의 공시시한을 (기존) 사업연도말 10일전 → (개정) 기준일 10일전으로 변경
- 현금배당을 위한 기준일 결정시 공시의무 신설(제6조 제5호 라목)
  - 상장법인이 결산배당을 위한 기준일 결정시 공시의무를 신설하되, 정관에서 기준일을 별도로 정하고 있어 상법상 공고의무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함
- 전환가액 조정 제도 개선 관련 신고사항 범위 확대(제18조 제9호)
  - 시가하락에 의한 전환가액 등 조정 이외에 시가상승시 상향조정도 신고사항에 포함
    - 시가하락에 따른 조정 이후 상승시 발행당시 전환가액 범위내에서 상향조정이 의무화되는 전환가액 조정 제도 개선사항 반영(증발공규정, 2021. 12. 1. 시행)

## 마.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(2021/11/24 개정 · 시행)<sup>3)</sup>

### 1) 개정 이유

- 무위험지표금리 등 단기금리의 위험관리를 위한 단기금리선물시장 등의 개설을 위해 시장개설 근거 및 선물거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
  - 무위험지표금리(Risk-Free Reference Rate)가 금융거래 중요지표로 지정
    - 무위험지표금리는 신용위험이 거의 없는 익일물 지표금리를 의미
    - 2021. 9. 29, '무위험지표금리(RFR)의 금융거래 중요지표 지정안' 금융위 의결

3) 거래소파생상품시스템 및 회원파생상품시스템의 개발에 필요한 기간 등을 고려하여 세칙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

## 2) 주요 내용

- 단기금리선물시장 및 단기금리선물스프레드시장 개설(제3조)
  - 금리상품시장에 단기금리선물시장을 추가하고, 선물스프레드시장에 단기금리선물스프레드시장을 추가
- 단기금리선물거래 관련 세칙 위임사항 명시 등(제43조의2~제43조의5)
  - 단기금리선물거래의 최종결제방법을 현금결제방식으로 하고, 기초자산·거래단위·결제일 등 세부사항을 세칙에서 정하도록 위임근거 마련

## 바.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(2021/11/25 개정 · 2021/11/29 시행)

### 1) 개정 이유

- 주가지수옵션의 행사가격범위 확대, 결제주 종목의 이론가격 산출개선 등을 통하여 시장참가자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함
- 외국인 통합계좌에 대한 누적호가수량한도의 적용 및 미결제약정의 이관이 최종투자자별로 이루어지도록 개선하여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함

### 2) 주요 내용

- 주가지수옵션의 행사가격 범위 확대 및 행사가격단위 조정(제6조)
  - 코스피200지수 대비 행사가격 범위가 협소하여 발생하는 투자자의 거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지수옵션의 행사가격 수 및 범위 확대
  - 유동성이 낮은 월물의 행사가격단위를 조정하여 거래 효율성 제고

구 분	행사가격 수 및 범위				행사가격 단위		
	기존		개정		기존	개정	
코스피 200 옵션	결제주종목	17개	(ATM±20p)	33개	(ATM±40p)	2.5p	(좌동)
	1-3근월물	33개	(ATM±40p)	65개	(ATM±80p)		(좌동)
	4-6근월물			49개	(ATM±120p)		5p
	7-8근월물	25개	(ATM±60p)	49개	(ATM±120p)	5p	(좌동)
	9-11근월물	13개	(ATM±60p)	25개	(ATM±120p)	10p	(좌동)
미니코스피 200옵션	1-3근월물	33개	(ATM±40p)	65개	(ATM±80p)	2.5p	(좌동)
	4-6근월물			33개	(ATM±80p)		5p

\* 행사가격의 최초 설정(거래개시일)은 2021년 12월 상장(결제주종목 2021. 12W03종목, 결제월종목은 2024년 12월물, 미니상품은 2022년 6월물)부터 적용하고, 추가 설정은 시행일(2021. 11. 29)부터 적용

- 결제월별 행사가격 추가 설정범위 축소를 통해 수요가 한정적인 종목 상장을 최소화하여 극외가격 종목의 유동성을 집중하고 시스템 효율성을 제고
  - 전산프로그램 개발 소요기간 등을 감안하여 '22년 상반기 시행예정
  
- 코스피200지수옵션 결제주종목의 이론가격 산출방식 개선(별표15)
  - 이론가격 산출의 신뢰도 제고를 위하여 결제주종목의 이론가격 산출시 행사가격이 인접한 모든 종목의 거래가 없는 경우 결제월종목의 평균 연 내재변동성을 사용하여 이론가격을 산출하도록 개선
  
- 외국인 통합계좌의 편의성 제고 등을 위한 제도개선(제114조의5, 제114조의6)
  - 외국인 통합계좌의 실질적인 계산주체별로 누적호가수량한도의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최종투자자별로 누적호가수량한도를 적용
  - 외국인 통합계좌 내 최종투자자가 해외 중개업자, 수탁회원사 변경 등 계좌변경이 필요할 경우 거래소를 통해 미결제약정을 이관할 수 있도록 개선
    - 회원은 이·수관 당사자가 서로 동일인임을 확인하여 미결제약정 이관신청시 관련 내용을 입력하도록 함

## 사. KRX금시장 운영규정 (2021/11/8 개정 · 2022/1/3 시행)

### 1) 개정 이유

- KRX금시장의 안정적인 결제이행 보증 및 회원별 증거금 납부의 형평성 제고를 위하여 관련 조문을 정비하기 위함

### 2) 주요 내용

- 일반회원의 금지금 매수호가 제한(제75조 제5항 및 제6항)
  - 증거금을 납부 중인 실물사업자와 마찬가지로 일반회원에 대해서도 매수호가 제한 의무 부과
    - 시장 거래 활성화 및 가격연속성 제고를 위하여 유동성공급회원이 유동성공급호가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면제
    - 일반회원 자기매매 매수거래에 대한 규정 준수 여부 확인을 위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

## 아. 증권·파생상품시장 증거금 관리지침 (2021/11/25 개정·2021/11/29 시행)

### 1) 개정 이유

□ 최저증거금을 제도 등을 도입하여 증거금 제도의 경기순응성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국제기준 정합성을 제고하기 위함

### 2) 주요 내용

□ 최저증거금률 제도 도입(제5조, 제6조, 제10조, 제11조, 별표2 및 별표3)

- 거래증거금률 산정 시 증권유형별(증권시장) 또는 기초자산별(파생시장) 최저증거금률을 하한으로 설정
- 최저증거금률 산출시 가산하는 버퍼는 단계적으로 확대
  - 15%(시행일 ~ 2022년 12월) → 20%(2022년 12월 ~ 2023년 12월) → 25%(2023년 12월 ~ )

□ 증권시장 경기순응성 완화비율 확대(별표3)

- 국제기준 정합성 제고 및 시장간 균형 도모를 위해 증권시장 경기순응성 완화비율을 단계적으로 확대
  - 5%(기준) → 15%(2022년 6월 ~ 12월) → 20%(2022년 12월 ~ 2023년 12월) → 25%(2023년 12월 ~ )

□ 증거금률 변경단위 조정(제15조)

- 변동성에 부합하는 증거금률 산출을 위해 금리·통화 파생상품의 증거금률 변경단위를 0.01%포인트 단위로 미세 조정

## 자. KRX석유시장 운영규정 (2021/11/8 개정·2021/11/29 시행)

### 1) 개정 이유

□ 석유제품 배송에 다양한 용량의 유조차가 활용되는 현실을 반영하고 석유제품 배송시한 한도를 확대하여 거래수용성을 강화하며 국제유가 변동성과 배송시한 한도 확대에 대응하여 결제안정성을 보완하기 위함

### 2) 주요 내용

□ 업계 현실을 반영한 경쟁매매 호가수량단위 및 매매수량단위 인하(제31조)

- 경쟁매매 호가수량단위 및 매매수량단위를 2만리터에서 4천리터로 인하

□ 결제안정성 제고를 위한 거래보증금 인상(제33조)

- 국제유가 변동성 확대 등에 따라 거래보증금 인상
  - 경쟁매매는 (기존) 호가 수량단위(2만리터) 당 150만원 → (개정) 호가수량단위(4천리터) 당 40만원
  - 협의상대거래는 (기존) 2천리터당 15만원 → (개정) 20만원으로 변경

□ 거래수용성 제고를 위한 석유제품 배송시한 한도 확대(제57조)

- 거래당사자간 합의에 의한 석유제품 배송시한을 (기존) 매매체결일로부터 기산하여 네 번째 매매거래일의 18시까지 → (개정) 매매체결일로부터 기산하여 다섯 번째 매매거래일의 18시까지로 확대

□ 결제안정성 제고를 위한 결제지연 거래보증금 인상(제58조, 제67조)

- 경쟁매매 호가수량단위가 2만리터에서 4천리터로 인하됨에 따라 거래보증금을 현금으로 예탁하지 않은 참가자의 결제지연 거래보증금인상
  - 경쟁매매는 (기존) 호가수량단위(2만리터)당 500만원 → (개정) 호가수량단위(4천리터)당 140만원
  - 협의상대거래는 (기존) 2천리터당 50만원 → (개정) 70만원
  - 알뜰공급계약 대상종목은 (기존) 1천리터당 25만원 → (개정) 35만원으로 변경

## 차. KSM 운영지침 (2021/11/9 개정 · 2021/11/11 시행)

### 1) 개정 이유

- KSM시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추천기관 관리방식 및 등록신청서류를 변경하고, 시장 활성화 전까지 시스템 이용료 면제기간을 추가 연장하기 위함

### 2) 주요 내용

□ 추천기관 관리 방식 변경(제2조 제1항, 제3조의2)

- 추천기관 선정 요건을 지침에 두고, 명단은 별도 관리하도록 변경

□ 등록신청서류 추가(제4조 제5의2호)

- 등록신청법인의 제출 서류에 주식양도에 제한이 없음을 확인하는 서류(법인 대표자의 확인서 등)를 추가

□ KSM시스템 이용료 면제기간 연장(지침 제513호 부칙 제3조)

- (기존) 2021년 11월 14일 → (개정) KSM 거래실적을 고려하여 거래소가 별도로 정하는 날

## 카. 사회책임투자채권 전용 세그먼트 운영지침 (2021/11/23 개정 · 2021/11/29 시행)

### 1) 개정 이유

- 투자자 보호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해 사회책임투자(SRI)채권 전용 세그먼트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고 관리를 강화하기 위함

### 2) 주요 내용

- SRI채권의 조달자금 사용 보고서등의 제출시한 명확화 및 단축(제8조 제1항)
  - 조달자금 사용 보고서등을 2회 이상 제출하는 경우 제출시한을 (기존) 매년 → (개정) 매년 연도말까지로 명확화
  - 만기도래 또는 중도상환 등으로 상장폐지되는 경우 적시에 조달자금 사용 보고서등을 투자자에게 제공하기 위해 제출시한을 (기존) 다음 연도 말까지 또는 매년 → (개정) 상장폐지일까지로 단축
- 조달자금 사용 보고서등 관련 추가 정보 제출(제8조 제2항 신설)
  - 조달자금 사용 보고서등의 제출시기별 구분, 조달자금의 사용 금액 등 거래소가 정하는 사항을 기재하여 제출할 의무 부과
- SRI채권 등록취소시 SRI채권 전용 세그먼트에 공지할 근거 마련(제9조 제2항 신설 및 별지 제1호 서식)
  - 거래소는 SRI채권이 등록 취소되는 경우 투자자 보호를 위해 SRI채권 전용 세그먼트에 공지할 수 있음
- 그 밖에 시장관리의 효율성을 위한 개선사항 및 자구 수정 등
  - SRI채권 상장법인의 자발적 등록취소 신청을 위한 등록취소신청서 마련(별지 제2호서식 신설)
  - 시장관리를 위해 등록 SRI채권의 외부평가기관 및 주관회사 정보 입력 추가(별지 제1호서식)
  - SRI채권 상장법인의 지침 준수 강화를 위해 등록 신청서에 지침 준수 약속의무 신설(별지 제1호서식)
  - 기타 조문 및 자구 정비(제7조제2항 및 별지 제1호서식)

선임연구원 신경희(02-3771-0854, skh0828@kcmi.re.kr)